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美 연방합동 대책위 화학물질처리시설 안전성 개선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환경보호국(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산업안전보건청(OSH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협력하여 화학물질처리시설의 안전성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각 기관의 사무관들로 구성된 화학시설 안전성 및 보안성 특별조사위원회(the Chemical Facility Safety and Security Working Group)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잠재적 규칙제정과 안내서 발간을 위한 대책위원회 조직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4월 텍사스 서부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보고서에는 화학시설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개선하고 질산암모늄과 같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행동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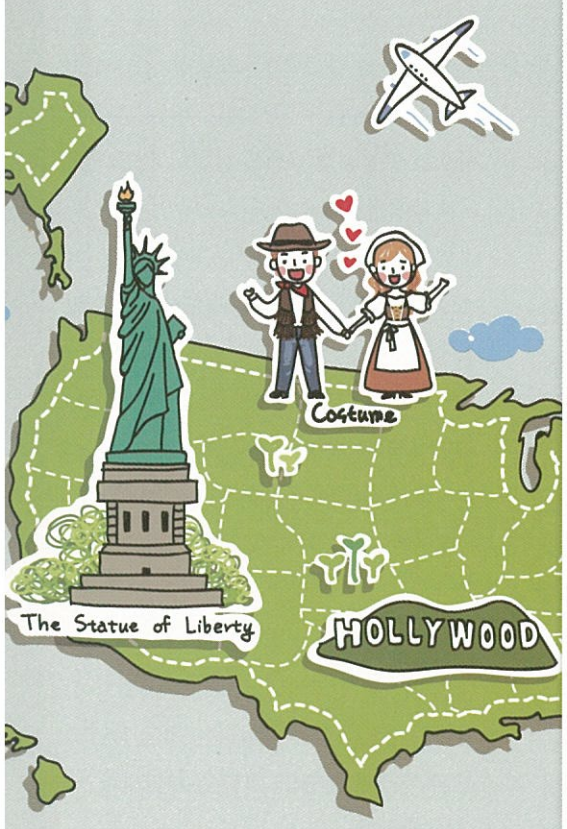

OSHA, 공정안전보고기준 현대화

OSHA는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의 누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헷갈리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을 분명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개정될 정책을 살펴보면 기준에 부합하는 화학약품 농도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 세부 설명과 우수사례에 초점을 맞춰 변경되는 것이 포함됐다. 향후 OSHA는 기준 현대화를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조언을 모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EPA, 위험성 관리 프로그램 규정 개선

EPA는 규제 받는 화학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 및 현존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반영을 검토 중에 있다. 일례로 반응성 또는 폭발성 화학물질을 규제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또 자동 탐지나 모니터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필수요건 추가, 도급업자의 안전 필요조건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질산암모늄 관리에 대한 보안성 강화

합동대책위원회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평가하고 행동방안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EPA의 위험성 관리 프로그램과 OSHA의 공정안전관리기준 하에 질산암모늄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고, 질산암모늄의 허용치 심사와 관련된 규칙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